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18 발의연월일: 2020. 10. 28.

발 의 자: 민홍철·최인호·신정훈

김윤덕 • 이용선 • 강선우

김홍걸 • 박영순 • 홍기원

윤재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방음·냉방시설 설치, 전기료 지원 등의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도서관, 체육공원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공동작업장·공동영농시설 설치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지원방식은 일상화된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공항 주변지역 및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 부근의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공사·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 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 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대상, 우대 요건, 우대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
	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
	<u>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우대할 수 있
	는 계약의 대상, 우대 요건, 우
	대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u>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